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7-72호
2017. 9. 22.(금)

차 례

고 시(3)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180호)1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새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7-184호)2
- 도시관리계획(만남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7-185호) ...5

공 고(9)

-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공고 제2017-715호)8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7-729호)13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30호)1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31호)1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32호)1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7-733호)17
-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도로 지정 변경 공고(공고 제2017-743호)18
- 건축법 상 도로지정 변경 공고(공고 제2017-744호)19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17-749호)20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740호) ...2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741호) ·28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7-742호)38

공 람									
--------	--	--	--	--	--	--	--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 여 고시일	도 로 명 주 소 부 여 사 유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도 로 명 고 시 일)	비 고
목상동 156-16	대덕대로1458번길 53	2017.9.22.	건축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4,5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435-24	상서당1길 52-6	2017.9.22.	건축물신축	윗마을 서당이라는 웃서당,상서당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석봉동 194-23	석봉북로24번길 5	2017.9.22.	건축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새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89번지 일원 새뜸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새뜸)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과 ☎042-608-511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자연취락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덕구5. 새뜸	자연취락 지구	대덕구 장동 789일원	4층이하	14,070	대고99호 ('06.7.20)	

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새뜸지구)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대덕구5. 새뜸	대덕구 장동 789일원	14,634.3	-	14,634.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운수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 계	2	263	1,295	-	-	-	-	-	-	2	263	1,295
대 로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2	263	1,295	-	-	-	-	-	-	2	263	1,29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장동1	6	국지도로	147	장동775-3	장동765-2	일반도로			2006.7.20.	
변경	소로	3	장동1	4~6	국지도로	151	장동775-3	장동765-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장동2	6	국지도로	114	소로3-장동1	장동784	일반도로			2006.7.20.	
변경	소로	3	장동2	4~6	국지도로	112	소로3-장동1	장동784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장동1	소로 3-장동1	· 폭원 축소 및 선형변경 - 폭원 : 6m → 4~6m	·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및 지장물 간섭을 최소화하고, 현황도로의 활용으로 현실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의 폭원 및 선형 변경
소로 3-장동2	소로 3-장동2	· 폭원 축소 및 선형변경 - 폭원 : 6m → 4~6m	·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및 지장물 간섭을 최소화하고, 현황도로의 활용으로 현실적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의 폭원 및 선형 변경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장동4 주차장	장동783	160	증) 199	359	2006.7.2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동4 주차장	· 면적 증가 - 면적 : 160㎡ → 359㎡ 증) 199㎡	· 소로3-장동1호선 선형변경 및 주차면수 확보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장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만남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구 중리동 174-1번지 만남어린이공원에 주민건의사업의 일환으로 편익·휴양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덕구청장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만남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만남어린이공원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당초	변경		
변 경		만남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대덕구 중리동 174-1번지	1,510.2	1,510.2	건교부 고시 제315 호 (1984.08.20)	

나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결 정 내 용	변 경 사 유
-	만남 어린이공원	- 도심 속 공원에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팔각정자를 신규 설치	- 다른 공원에 비해 그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정자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에 공원 이용객들의 휴양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요청

다. 공원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조서

공원명	공원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시설면적(m ²)		시설율(%)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만남공원	1,510.2	1,510.2	903.5	903.5	59.83	59.83	19.5	19.5	19.5	19.5	

(2)공원조성계획 결정 시설조서

구 분	공원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구성비(%)	비고
총 계	1,510.2	-	-	100.00	
시 설 소 계	903.5	19.5	19.5	59.83	
기 반 시 설	344.3	-	-	22.80	
휴 양 시 설	105.9			7.01	정자신규설치
유 희 시 설	308.8			20.45	
수 경 시 설	100.1			6.63	
조 경 시 설	24.9	-	-	1.65	
편 익 시 설	19.5	19.5	19.5	1.29	
녹 지	606.7	-	-	40.17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조서

(1) 세부시설조서 총괄표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m ²)			시설(개소)		건축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510.2	1,510.2	-	20	21	-	-	-	-	-	-	
시설소계			903.5	903.5	-	-	-	-	-	-	-	-	-	
기반 시설		소계	344.3	344.3	-	-	-	-	-	-	-	-	-	
		광장	285.5	285.5	-	-	-	-	-	-	-	-	-	
		소로	58.8	58.8	-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105.9	105.9	-	20	21	-	-	-	-	-	-	
		야외무대	50.8	50.8	-	1	1	-	-	-	-	-	-	
		휴게테크	28.6	28.6	-	1	1	-	-	-	-	-	-	
		사각파고라	26.5	26.5	-	2	2	-	-	-	-	-	-	
		원형벤치	-	-	-	2	2	-	-	-	-	-	-	
		평의자	-	-	-	10	10	-	-	-	-	-	-	
		등의자	-	-	-	4	4	-	-	-	-	-	-	
	팔각정자	-	-	-	-	1	-	-	-	-	-	-	신규	
유희 시설		소계	308.8	308.8	-	-	-	-	-	-	-	-	-	
		놀이공간	308.8	308.8	-	-	-	-	-	-	-	-	-	
수경 시설		소계	100.1	100.1	-	-	-	-	-	-	-	-	-	
		수경	100.1	100.1	-	-	-	-	-	-	-	-	-	
조경 시설		소계	24.9	24.9	-	-	-	-	-	-	-	-	-	
		플랜터	24.9	24.9	-	-	-	-	-	-	-	-	-	
편의 시설		소계	19.5	19.5	-	-	-	19.5	19.5	-	19.5	19.5	-	
		화장실1	19.5	19.5	-	-	-	19.5	19.5	-	19.5	19.5	-	
녹지			606.7	606.7	-	-	-	-	-	-	-	-	-	

(2) 공원조성계획 도로결정 세부조서

구분	등록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총계					24.1	58.82				
소로	소계				24.1	58.82				
	소로	3	1	2.4	10.1	23.07	진입도로	공원경계서측	유희시설	
	“	“	2	3	7.5	22.54	연결도로	광장	“	
로	“	“	3	2	6.5	13.21	연결도로	화장실	화장실	
합계					24.1	58.82				

마. 관계도면 : 기재생략. 끝.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7년도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예정)		
고릿골천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공사	당초	대덕구 갈전동 487	대덕구 갈전동 498	-	290m	-	2017.06.	2017.12.	재해예방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변경	"	"	-	"	-	2017.06.	2018.03.	"	

열람서류

1. 시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별첨)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별첨)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열람장소 : 대덕구청 건설과(tel : 042-608-525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토·일 공휴일 포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당 초)

◎ 사업명 :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공사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15필지)

용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 고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 용	
1	갈전동	487	유	1,421	75		국 (국토교통부)				
2	"	566-2	유	463	320		국 (농림축산 식품부)				
3	"	488	유	1,141	326		국 (국토교통부)				
4	"	489-1	답	350	9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104 (도룡동)	여흥민씨정량 공파종중				
5	"	485-1	답	2,218	42	신탄진읍 갈전리 224	안성근				
6	"	490	답	1,392	219	249	변영준				
7	"	491	답	2,364	231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70, 113동1107호 (월평동, 누리아파트)	변병복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81 번길2 (덕암동)	신탄진 농업협동조 합	근 자 소 권	
8	"	510	전	1,625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113동102호 (법동, 보람아파트)	이종학				
9	"	566-1	구	6,985	722		국 (농림축산식품 부)				
10	"	507	답	56	56		연병은				
11	"	492-1	답	722	7	유성구 송강동 8-2청솔아파트 207동510	변범배				
12	"	494	답	1,68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남로 26, 504호 (신탄진동, 흥진아파트)	김유택				
13	"	506	답	1,653	254		국(환경부)				
14	"	499	답	516	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남로26, 504호 (신탄진동, 흥진아파트)	김유택				
15	"	498	전	1,306	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26번지10 (전민동)	김홍식				
계				23,895	2,568						

사 용 또 는 수 용 할 토 지 조 서 (변 경)

◎ 사업명 : 갈전동 고릿골천 정비공사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15필지)

용지 번호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편입	소유자		관계자			비 고
				(㎡)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 용	
1	갈전동	487	유	1,421	75		국 (국토교통부)				
2	"	566-2	유	463	315		국 (농림축산 식품부)				
3	"	488	유	1,141	333		국 (국토교통부)				
4	"	489-1	답	350	9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56번길104 (도룡동)	여흥민씨정랑 공파종중				
5	"	485-1	답	2,218	41	신탄진읍 갈전리 224	안성근				
6	"	490	답	1,392	225	249	변영준				
7	"	491	답	2,364	244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70, 113동1107호 (월평동, 누리아파트)	변병복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81 번길2 (덕암동)	신탄진 농업협동조 합	기 지 소 유 권	
8	"	510	전	1,653	9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113동102호 (법동, 보람아파트)	이종학				
9	"	566-1	구	6,985	1,104		국 (농림축산식품 부)				
10	"	507	답	56	56		연병은				
11	"	492-1	답	722	7	유성구 송강동 8-2청솔아파트 207동510	변범배				
12	"	494	답	1,683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남로 26, 504호 (신탄진동, 흥진아파트)	김유택				
13	"	506	답	1,653	451		국(환경부)				
14	"	499	답	516	7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남로26, 504호 (신탄진동, 흥진아파트)	김유택				
15	"	498	전	1,306	176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26번지10 (전민동)	김홍식				
계				23,923	3,289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2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읍내동 22 번지	18m ²	1.25m	187m	정용구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번호	점용목적	굴착장소	시행자(점용자)	시설물종류	포장종류	굴착연장(m)	굴착면적(m ²)
2017-56호	신호등	계	한국수자원공사	전기통신관	아스팔트	12.0	12.0
	통신관로 매설	미호동 41번지 앞 일원				12.0	12.0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57호	교통시설물, 신호등 통신/ 전기관로 매설	계	대우조선해 양건설(주)	통신/전기 관로	아스팔트 투수콘 아스콘 보도블럭	111.0	133.2
		석봉동 771번지 앞				111.0	133.2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 -58호	가스관 매설	계	(주)충남도시 가스	가스관	아스팔트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32.0	38.4
		대화동 254-1번지 앞				5.0	6.0
		대화동 31-40번지 앞				5.0	6.0
		비래동 106-5번지 앞				6.0	7.2
		상서동 831-4번지 앞				4.0	4.8
		석봉동 188-16번지 앞				10.0	12.0
		상서동 833-11번지 앞				2.0	2.4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점용장소 및 내역 :

허가 번호	점용 목적	굴착장소	시행자 (점용자)	시설물 종류	포장종류	굴착 연장 (m)	굴착 면적 (㎡)
2017-59호	가스관 매설	계	(주)충남도시 가스	가스관	아스팔트	18.0	21.6
		덕암동 46-7번지 앞				18.0	21.6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3. 공사 실시방법 : 노면 굴착

4. 도로굴착 및 복구주체 : 원인자(피허가자) 복구

5. 굴착 시 교통 대책 : 교통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등

6. 기 타 사 항 : 타 지하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의시행 및 허가조건 준수

건축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도로 지정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33-40번지 상 건축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변경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당초	오정동 233-40번지	24m ²	2.1m	11.5m	오인숙
	오정동 233-40번지	17m ²	2.1m	8.3m	오인숙
	오정동 233-41번지	26m ²	2.1m	11.5m	오인숙
변경	오정동 233-40번지	24m ²	2.14m	11.2m	백재숙
	오정동 233-40번지	1m ²	0.42m	1.8m	오인숙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상 도로지정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33-38번지 건축법 상 도로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변경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 유 자	비 고
		면 적	너 비	길 이		
당초	오정동 233-38	16㎡	1.81m	8.8m	백재숙	분할 및 합병
	오정동 233-40	5㎡	2m	2.5m	오인숙	
	오정동 233-40	6㎡	2m	3m	오인숙	폐지
변경	오정동 233-38	21㎡	1.91m	11m	백재숙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2-4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142- 4번지	19.2m ²	4m	27.77m	김은혜 조보희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5)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검토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법소지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의장추천”에서 “의회
의 추천”으로 수정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나. 조례로 정한 시행규칙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
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5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 조부터 안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0.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
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55,
FAX : 042-608-3811, E-mail : kspark17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박광수 (전화: 042-608-60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을 “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1. “통합관리기금”<u>이라 함은</u>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p> <p>2. “여유자금”<u>이라 함은</u>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p> <p>3. “지정금고”<u>라 함은</u>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p> <p>4. “기금운용관”<u>이라 함은</u>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 각 호와</u> ----- ----- ----- 1. -----<u>이</u>란 ----- ----- ----- ----- 2. -----<u>이</u>란----- ----- ----- ----- ----- 3. -----<u>란</u>----- ----- ----- ----- ----- 4. -----<u>이</u>란----- ----- ----- ----- -----</p>
<p>제7조(예탁금 이자) <u>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u>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율을 고려하여</p>	<p>제7조(예탁금 이자) <u>제6조에 따라</u> ----- ----- ----- ----- -----</p>

<p><u>당해</u> 기금별로 배분한다.</p>	<p>-----<u>해당</u>----- -----.</p>
<p>제8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u>의하여</u>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p> <p>②·③ (생략)</p>	<p>제8조(통합관리기금 관리·운용) ① ----- ----- <u>따라</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통합관리기금의 배정)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u>“법”</u>이라 한다) <u>제11조의 규정</u>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p>	<p>제9조(통합관리기금의 배정) -- ----- ----- ----- -----<u>“법”</u>----- --<u>제11조에 따른</u>----- ----- ----- -----.</p>
<p>제12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제12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p>	<p>② ----- ----- <u>각 호</u>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p>

<p>② (생략)</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u>구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p> <p>3. (생략)</p> <p>③ (생략)</p>	<p>2. <u>구의회에서</u> ----- -----</p> <p>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② (생략)</p> <p>③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2. (생략)</p>	<p>제1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u>각 호</u>----- ----- -----</p> <p>-.</p> <p>1.·2.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행규칙) <u>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제></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 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7개의 조례를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7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 “국민안전처(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변경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을 “인사혁신처(장)” 으로 변경
- “중소기업청(장)” 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으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0.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
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61,
FAX : 042-608-3811, E-mail : hmo07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홍영욱 (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대전 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준용) (생략)</p> <p>1.·2. (생략)</p> <p>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u>안전행정부장관</u>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p>4. ~ 6. (생략)</p> <p>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u>안전행정부장관</u>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8. (생략)</p>	<p>제5조(준용)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인사혁신처장</u>-----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 ----- ----- -----<u>인사</u> <u>혁신처장</u> ----- ----- ----- ----- ----- -----.</p> <p>8. (현행과 같음)</p>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시험수당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수당)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u> 시행하는 시험의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 (수당) ① ----- ----- ----- -----<u>인사혁신처장</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p> <p>① (생략)</p> <p>1. 2. (생략)</p> <p>3. 감사원장, <u>행정자치부장관</u>,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p> <p>4. 5. (생략)</p> <p>② (생략)</p>	<p>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p> <p>①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u>행정안전부장관</u>----- ----- ----- -----</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법령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u>행정자치부장관</u>과, 시장의 예규 및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p>	<p>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p>

제6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중소기업청장</u>이 정하는 전통상점가</p> <p>②·③ (생 략)</p>	<p>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② (생 략)</p> <p>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u>국민안전처장관</u>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5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 <u>행정안전부장관</u>----- -----</p> <p>④ (현행과 같음)</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 각부를 인용하고 있는 4개의 규칙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에 대하여 정부조직법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변경
- “안전행정부” 를 “행정안전부” 로 변경
- “농림수산식품부” 를 “농림축산식품부” 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10.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61,

FAX : 042-608-3811, E-mail : hmo07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 담당자 홍영옥(전화 : 042-608-60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8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경제과) 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7. (생 략)</p> <p>28. 국유재산(<u>농림수산식품부</u>) 관리에 관한 사항</p> <p>29. ~ 72. (생 략)</p>	<p>제11조(경제과) ----- -----.</p> <p>1. ~ 27. (현행과 같음)</p> <p>28. -----(<u>농림축산식품부</u>) -----</p> <p>29. ~ 72. (현행과 같음)</p>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u>행정자치부</u>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의거 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p> <p>3. ~ 10. (생 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행정안전부</u> ----- ----- ----- ----- ----- ----- ----- ----- -----.</p> <p>3. ~ 10. (현행과 같음)</p>
<p>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u>행정자치</u></p>	<p>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 ----- -----</p>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p> <p>② (생략)</p>	<p>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5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1조(계약의 체결)①·② (생략)</p> <p>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u>행정자치부</u></p>	<p>제121조(계약의 체결)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